



의안번호	제101호
회의 연월일	2025. 9. 1. (제571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제출연월일	2025. 8. 18.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계장, 운전면허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보유한 교육생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도로연수교육을 명시하고 자동차의 표지·도색, 강사 배치 요건 등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과 달리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무 등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연수교육 신설 등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교육의 경우(이하 ‘도로연수교육’이라고 한다.)의 경우 자동차의 기준 및 강사의 자격요건 등을 운전면허 취득 이전에 받는 교육인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실정으로, 도로연수교육을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에서 분리 명시하며, 도로연수교육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후 고속도로 주행 등 다양한 교육을 희망하는 교

육생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교육과 도로연수교육을 분리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표시 및 도색, 강사당 차량배치기준, 도로연수를 위한 도로의 요건 등 기존의 도로주행교육보다 완화한 별도 기준 마련함(안 제60조 제3항, 안 제6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2항, 제3항, 안 별표 5 개정)

나. 교통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근거 마련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위탁업무의 수행)를 삭제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74조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여 개인정보처리대상 사무에 「도로교통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4 제2항 제1의2호)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1. 자동차등의 운전に必要な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に必要な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3.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4.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연수교육”이라 한다)

제63조제2항 중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교육용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도로연수교육용 자

동차에는 도로연수교육 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로주행교육”을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2.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3.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로연수교육: 교육용 자동차 5대당 1명 이상

제65조제1항제1호 중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도로주행교육”을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주행교육용”을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으로,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도로주행교육·도로연수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으로 한다.

마. 도로연수교육: 교육용 자동차 5대당 1명 이상

제8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9조 및 제86조”를 “제86

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9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용”
을 “기능교육용, 도로주행교육용,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주행교육용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공통 기준
별표 5 제10호 중 “지문 등”을 “지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 경찰청장이 정
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단서 중 “서버”를 “서버 또는 정보
통신망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
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② (생략) ③ 학원은 자동차등의 운전<u>에</u>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자동차등의 운전<u>에</u>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생략)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생략) 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1. 자동차등의 운전<u>에</u>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u>에</u>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3.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4.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연수교육”이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교육용 자동차 -----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
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
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
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
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
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

1.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2.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
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
육용 자동차”라 한다)

3.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
한 자동차(이하 “도로연수교
육용 자동차”라 한다)

③ -----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도로연수
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연수교
육 표지-----.

④ -----
----- 도로주행교육 및 도
로연수교육-----
-----.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

호와 같다.

1. (생략)

2.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기능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整數)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도로연수교육: 교육용 자

동차 5대당 1명 이상

③·④ (현행과 같음)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 -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
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나. (생 략)

다. 도로주행교육은 제63조제
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3. (생 략)

② (생 략)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
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
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
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

-----.

1. -----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
로연수교육-----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
수교육-----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3. 삭제

4. (생략)

② (생략)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 · 형상 · 구조 및 도로주행교육 · 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⑤ (생략)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 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도로연수교육: 교육용 자동차 5대당 1명 이상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
----- 도로주행교육 · 도로연수교육 · 도로주행기능검정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제86조-----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present.

1. ~ 14. (현행과 같음)

②

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 는 제외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u> <u>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u> <u>확인 등에 관한 사무</u> 2. ~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